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89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2월 2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12. 21.~ 1. 4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대상자 주소
1	박*국	1967. 12. 22.	0178200274100007419 0178200274100006537 0178200274100005068 0178200274100003916 0178200274100003912 0178200274100001544	₩13,381,200 ₩9,558,000 ₩8,602,200 ₩22,302,000 ₩13,199,760 ₩22,302,000	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
2	에이티****정보	110114-0076***	0178220274100003601	₩8,850,000	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
3	전*기	1970. 10. 14.	0178202274100000801 0178200274100007408 0178200274100006889 0178200274100005203 0178200274100005667 0178200274100006118	₩7,560,000 ₩19,116,000 ₩38,232,000 ₩13,275,000 ₩24,990,000 ₩45,300,000	강원도 동해시 발한로
4	최*형	1990. 10. 25.	0178210274100002507 0178220274100002672	₩2,033,500 ₩3,862,500	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 환로112길
5	최*철	1971. 8. 31.	0178200274100002352	₩5,527,500	경기도 파주시 가재울로
6	홍*한	1973. 11. 3.	0178200274100009363	₩30,900,000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 로
7	류*성	1973. 10. 15.	0178210274100001950	₩1,730,400	강원도 강릉시 입암로29 번길
8	박*철	1971. 5. 5.	0178200274100006708	₩31,860,000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 남대로1263번길
9	이*현(OK***족)	1971. 3. 6.	0178200274100005095 0178200274100003935	₩17,204,400 ₩10,113,600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 부대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대상자 주소
10	김*진	1962. 2. 5.	0178200274100001981	₩30,852,000	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
11	강*영	1964. 12. 5.	0178200274100003371	₩50,900,000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남 이길51번길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